

해양수산부 고시 제2015-191호

「폐기물저장시설 중 콘크리트구조물 안전기준에 관한 지침」(해양경찰청고시 제2012-5호)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

2015년 12월 08일
해양수산부장관

「폐기물저장시설 중 콘크리트구조물 안전기준에 관한 지침」 일부개정안

폐기물저장시설 중 콘크리트구조물 안전기준에 관한 지침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조 전단 중 “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-1037호”를 “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-467호”로 “제6장 하수처리장”을 “제9장 하수처리장”으로 한다.

제5조 전단 중 “해양경찰서”를 “지방해양수산청”으로 한다.

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7조(재검토 기한) 해양수산부장관은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

부칙 <2015-000호, 2015.00.00>

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2조(안전기준) ① (생략)</p> <p>② 제1항의 안전기준 중 제4호의 균열면적을 및 제7호의 철근노출면적율의 계산은 「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 제13조에 따른 <u>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-1037호 「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」</u>의 시행을 위하여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정한 「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」 중 <u>제6장 “하수처리장”</u>의 상태평가 기준 및 방법에 따른다.</p>	<p>제2조(안전기준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-467호</u> ----- ----- ----- ----- <u>제9장</u> ----- -----.</p>
<p>제5조(사용제한 등) ① (생략)</p> <p>② 폐기물해양배출업자는 사용 중인 콘크리트 폐기물 저장시설의 안전검사 또는 정밀안전진단 결과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경우 이에 관한 사실을 7일 이내에 관할 <u>해양경찰서</u>에 통보하여야 한다.</p>	<p>제5조(사용제한 등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----- <u>지방해양수산청</u> -----.</p>
<p>제7조(재검토기한) 「<u>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</u>」(대통령훈령 제248호)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,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24일까지로 한다.</p>	<p>제7조(재검토기한) <u>해양수산부장관</u>은 「<u>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</u>」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(매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</p>